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실태와 정책대응

- I. 민간이전경비 실태조사 배경
- II.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운용실태
- III. 민간이전경비 운용 · 관리 문제점
- IV. 민간이전경비 운용 · 관리 설문조사
- V. 정책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실태와 정책대응

I

민간이전경비 실태조사 배경

- 민간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비이전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방식으로 구성되어 세출과목의 이전경비 목(300) 가운데 민간이전 비목(307) 및 민간자본이전 비목(402)으로 연결됨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보조는 의료 및 구료비(307-0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경상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 · 위탁(307-04), 민간위탁금(307-05), 보험금(307-06), 연금지급금(307-07), 이차보전금(307-08), 운수업계보조금(307-09) 9개 세목, 민간자본이전 비목은 민간자본보조(402-01)와 민간대행사업비(402-02) 2개 세목으로 구성됨
- 이들 11개 세목 중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보조와 경비팽창 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민간이전경비 세목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경비팽창,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후관리 부실 등의 부작용이 빈번한 실정임

-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증가추세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자치단체 재정 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고 있음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보조금심의 등의 규제를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회하여 지원하거나 세목구분이 불분명한 제도상의 허점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저해하고 있음
 -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요구가 매년 증가추세
 - 이에 따라 동일단체 동일사업에 대해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 각각으로 중복지원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간 관계에서도 민간경상보조 내에 행사성 사업들이 많아 과목구분이 무의미해졌으며 자치단체 편의에 따라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중복집행이 보편화
- 이밖에 보조사업자가 교부된 보조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시비 발생 등 집행부의 감독부실과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상의 부작용도 발생함
-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실태 조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제도적 측면에서도 방지에 가까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민간이전경비 실태분석에 중점을 두고 상한제도입,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의 투명성, 사업성과의 정책환류 개선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II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운용실태

■ 민간이전경비의 범주 및 특성

- 행정안전부장관 훈령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의 별표 4에 따르면 민간이전경비를 9개 세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민간이전경비〉

01 의료 및 구료비	02 민간경상보조	03 사회단체보조금
04 민간행사보조금	05 민간위탁금	06 보험금
07 연금지급금	08 이차보전금	09 운수업계 보조금

-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은 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일부를 민간에 넘겨줄 때 수반되는 경비나 개인적인 보상으로 소극적인 민간이전경비 성격이 강함
 -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대가로 지원하는 경비(청소대행사업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로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성 경비의 특성을 지님
 - 의료 및 구료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은 단지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상적·소모성 경비임
- 반면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행사, 혹은 민간의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 가운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적극적 성격의 민간이전경비임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 및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

■ 민간이전경비제도의 의의

- 단위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민간이전경비의 정책의의, 순기능을 설명할 수 있음
 - 시장실패 혹은 정부실패를 예방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외부효과에 대한 내재화기능이 발휘됨
 - 시장과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거나 거래비용 등으로 비효율적인 분야
 - 지역주민의 선호, 사회경제적 특성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민간이 유리한 분야
 - WTO등 경제질서 재편으로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등 외부효과 창출기능이 우수한 경우
 -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 및 거버넌스(Governance)를 촉진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하에 효과적이고 적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공급
 - 지역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자생적 발전능력을 제고
 - 민간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파트너쉽 촉진

-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유리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할분담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민간 주도하에 창의적인 사업추진 가능

■ 민간이전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

- 민간이전경비는 공통적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제29조), 개별 법령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함

〈지방재정법 제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지원대상은 개별 민간이전경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관련한 해석, 적용범주 등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응
- 민간경상보조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민간사무 및 사업 중 기본적 경비를 제외하며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민간경상보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워탁하지 못하도록 규정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제17조) 이외에 특정 사회단체와 관련된 개별법령,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함
 - 다만, 친목, 정치활동, 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는 제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단체는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등의 추가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함
 - 지원범위는 사업비에 한정하며 ‘예산편성기준’의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되, 자본적 경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민간경상보조와 차별성이 모호함

■ 지원방법 및 절차

- 민간이전경비제도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 ‘재무회계규칙’에 규정을 두고 운용하며 공통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요구함
-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자기부담액 및 총보조액, 사업계획서,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접수

보조금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자금송부 ⇒ 정산

- 보조금 교부결정
 -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보조사업의 적정성, 자기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 보조금의 정산 및 감독

- 보조사업의 완료·폐지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여야 함
- 필요시 사업내용의 검사, 감독상 처분가능
- 법령 또는 보조조건의 위배,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 저하, 사업의 정지, 허위 또는 부정행위,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발생시 보조금 반환명령 가능

■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운용

- 200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구분하였음
 - 정액보조금은 13개 특정 사회단체에 한정하며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교부
 - 문화예술진흥법(한국예총), 노인복지법(대한노인회),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연맹), 국민체육진흥법(체육회),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지방문화원진흥법(지방문화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조직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 이들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는 보조금 지원총액의 60%를 지원받아 왔으며 특히, 3대 사회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가 27.6%를 점유
 - 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형평성, 정치적 오용가능성 등의 시비를 초래

〈표 1〉 종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2004년 기준)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3 대 정액 보조 단체 보조 금
121,859백만원(100%)	72,972백만원(59.9%)	33,616백만원(27.6%)

자료 :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

●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의 제도적 기반

-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정액보조금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였음
- 보조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화
- 동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 사업선정,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 산정공식은 다음의 <표 2>와 같이 4개 유형으로 분리함

<표 2> 사회단체보조금 자치단체 유형별 산정공식

유형별	산정식
시·도	$S = d + 7b/100,000 + 6a + 3p/100$
시·자치구,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S = d + 47b/100,000 + 40a + 18p/100$
일반구가 있는 시	$S = d + 12b/100,000 + 40a + 10p/100 + 211,000 \times \text{일반구수}$
군	$S = d + 35b/100,000 + 15a + 36p/100$

▲ S : 단체별 상한기준액

▲ b : 직전년도 당초일반회계예산규모(천원)

▲ a : 자치단체면적(km²)

▲ p : 직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명)

▲ d : 기초기준액(천원)

• 광역시·도(1,800,000천원)

• 시·자치구, 특별자치도의 행정시(470,000천원)

• 일반구가 있는 시(530,000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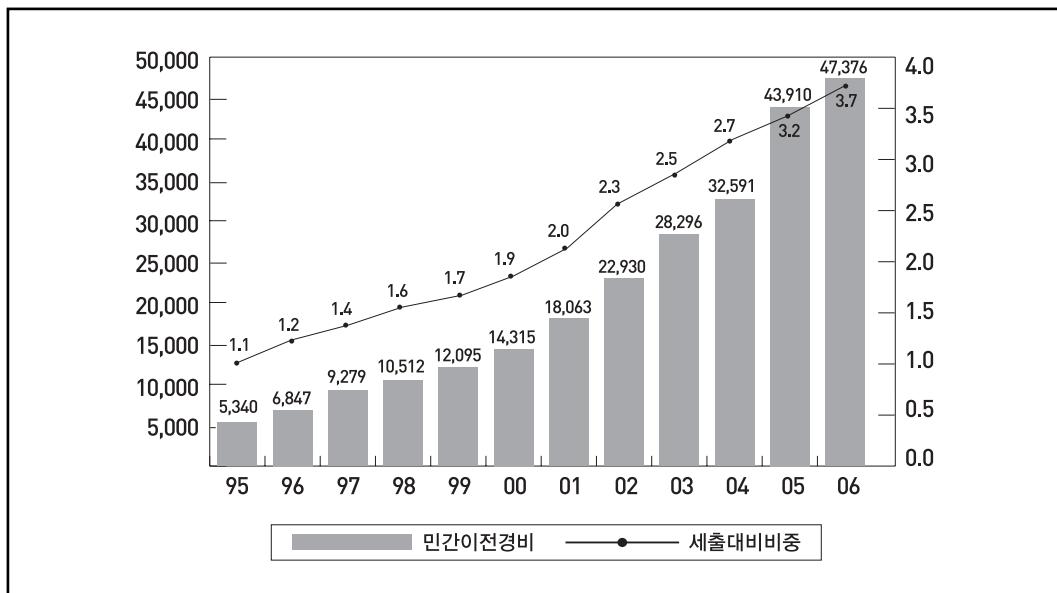
• 군(340,000천원)

III

민간이전경비 운용 · 관리 문제점

■ 민간이전경비 팽창

- 지방자치 이후 민간이전경비는 팽창추세에 있음
 - 현실적으로 지역내 이해집단 및 단체장의 예산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수단 미흡
 - 1995년 5,340억원에서 2006년에는 4조 7,376억원으로 8.8배 팽창하였으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도 1995년 1.1%에서 2006년 3.7% 급증
- 민간이전경비의 팽창은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의 모호성, 집행정산의 투명성 미흡, 성과평가등 사후관리 미진 등이 크게 작용하였음



주 : 2005년까지는 결산기준(재정연감), 2006년은 최종예산, 2007년은 당초예산(예산개요)

▣ 과목구분 모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형식상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목구분이 매우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출과목의 자의적 운용은 체육단체, 보훈단체 등 과거 관변·정액단체에서 주로 발견됨
 - 체육회,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를 과목구분 없이 자의적으로 편성하여 지원

〈표 3〉 사례분석: ○○군 민간이전경비 3대 보조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소계(A)	민간지원경비(B)	(A/B)×100
2005년	지활후건단체 (1,09백만원)	새마을단체 (35백만원)	○○군축구회 (620백만원)	2,564	12,186	21.8%
	농협중앙회 (228백만원)	환경개선단체 (24백만원)	○○군체육회 (279백만원)			
	○○군체육회 (129백만원)	○○문화원 (21백만원)	승첩제전회 (13백만원)			
2006년	지활후건단체 (946백만원)	새마을단체 (60백만원)	○○군체육회 (860백만원)	2,618	15,031	17.4%
	농협중앙회 (244백만원)	바르기살기 (33백만원)	승첩제전회 (145백만원)			
	생활체육단체 (244백만원)	○○문화원 (21백만원)	○○군축구회 (65백만원)			
2007년	지역자활단체 (1,036백만원)	새마을단체 (60백만원)	○○군체육회 (713백만원)	2,637	18,265	14.4%
	생활체육단체 (278백만원)	바르기살기 (33백만원)	승첩제전회 (159백만원)			
	농협중앙회 (234백만원)	○○문화원 (21백만원)	생활체육단체 (103백만원)			

주 : 과목별 상위 3대사업이며 당해연도 2회 이상 지원시 합계치로 처리하였음

■ 지원기준 포괄적

-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의4(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민간지원경비를 운용하고 있으나 보조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과목구분이 모호한 설정임
- 과목 자체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운용하며 편법에 의한 중복지원이 만연함
 - 자활단체의 경우 A군은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나 B군은 사회단체보조로 운용
 -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역시 자치단체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로 편성 · 운용

■ 특정 보조사업 편중

- 과목구분의 모호, 포괄적인 지원기준, 심의위원회 부실운용 혹은 미설치 등으로 특정 보조사업자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사례분석 : 충청북도 시 · 군을 보면 3대 보조사업의 편중현상이 크게 나타남
 - 제천시(59.1%), 증평군(54.6%), 단양군(50.4%)은 민간지원경비 중 3대 보조사업자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단양군은 민간행사보조의 대부분을 단양문화원(615백만원)에 지원

〈표 4〉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자 편중 현황 : 충청북도 시·군

(단위백만원, %)

구 분	민 간 경 상 보 조			사 회 단 체 보 조 금			민 간 행 사 보 조			민 간 지 원 경 비		
	3대사업 보조액	보조액 소계	비 중	3대사업 보조액	보조액 소계	비 중	3대사업 보조액	보조액 소계	비 중	3대사업 보조액	보조액 소계	비 중
청주시	11,490	77,219	14.9	533	1,679	31.7	660	4,072	16.2	12,683	82,970	15.3
충주시	799	18,332	4.4	494	8,300	6.0	1,398	5,348	26.1	2,691	31,980	8.4
제천시	10,164	16,385	62.0	137	840	16.3	1,579	2,891	54.6	11,880	20,116	59.1
청원군	2,850	23,567	12.1	105	482	21.8	218	1,446	15.1	3,173	25,495	12.4
보은군	2,131	10,638	20.0	163	423	38.5	754	1,677	45.0	3,048	12,738	23.9
옥천군	2,586	7,251	35.7	229	610	37.5	389	1,504	25.9	3,204	9,365	34.2
영동군	1,323	8,545	15.5	136	390	34.9	599	1,908	31.4	2,058	10,843	19.0
진천군	459	8,344	5.5	149	407	36.6	461	953	48.4	1,069	9,704	11.0
괴산군	1,451	5,242	27.7	121	350	34.6	550	798	68.9	2,122	6,390	33.2
음성군	2,457	15,250	16.1	77	340	22.6	441	752	15.2	2,975	15,626	19.0
단양군	3,397	7,529	45.1	162	162	100.0	658	675	97.5	4,217	8,366	50.4
증평군	3,565	6,103	58.4	92	310	29.7	490	1,189	41.2	4,147	7,602	54.6

자료 : 자체 설문조사 집계치

- ○○군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이전경비 3대 보조사업의 비중(최종예산 기준)이 2005년 21.8%에 달하였으며 2007년에도 14.4%임
 -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협회, 바르게살기운동협회 등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며 민간행사보조(승첩제전회, 체육회 등) 역시 지속지원

■ 대상사업 적정지원 · 집행 미흡

- 민간행사보조위탁의 경우 기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단체의 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전라북도 사례를 보면 2005년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193,058천원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84,000천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음(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14개 시군 민간지원예산 현황분석’, 2006)

■ 집행 · 정산기준 불합리

- 민간지원경비는 조례 및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일괄관리에 애로
- ○○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보조사업의 완료 · 폐지 혹은 사업의 종료시 정산검사 의무화, 보조조건의 위반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 등과 관련한 제재(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 반환)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 규정이 전무함
- 자치단체 및 주무부서마다 제각각의 운용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출관련 증빙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첨부되는 문제가 나타남
 - 정산절차등의 미숙으로 실무 공무원이 재작성하거나 관련 증빙서류 부실로 감사에 의한 징계사유로 작용
 - 신용카드에 의한 집행이 권장사항에 불과하여 원천적으로 증빙서류 누락 및 부실관리

■ 사후관리 및 정책환경 미흡

- 보조사업자의 사업성과, 보조금 집행 · 관리실적, 정책효과 등과 연계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과거 정액보조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례분석 : ○○구

- 민간경상보조 상위 3개 보조사업자(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회관), 민간행사보조의 생활체육협회가 최근 3년 동일함

〈표 5〉 상위 3개 민간이전경비 지원내역(○○구)

(단위백만원)

구 분	민간경상보조(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2005년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283)	새마을운동(63)	○○축제(107)
	자활후견기관(200)	바르게살기(34)	생활체육협회(37)
	노인복지센터(17)	자유총연맹(19)	카톨릭청소년회(10)
2006년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351)	새마을운동(66)	○○축제(107)
	자활후견기관(200)	바르게살기(36)	생활체육협회(16)
	노인복지센터(188)	자유총연맹(19)	카톨릭청소년회(10)
2007년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428)	새마을운동(69)	○○축제(107)
	자활후견기관(210)	바르게살기(37)	생활체육협회(13)
	노인복지센터(209)	자유총연맹(20)	축구동호인회(7)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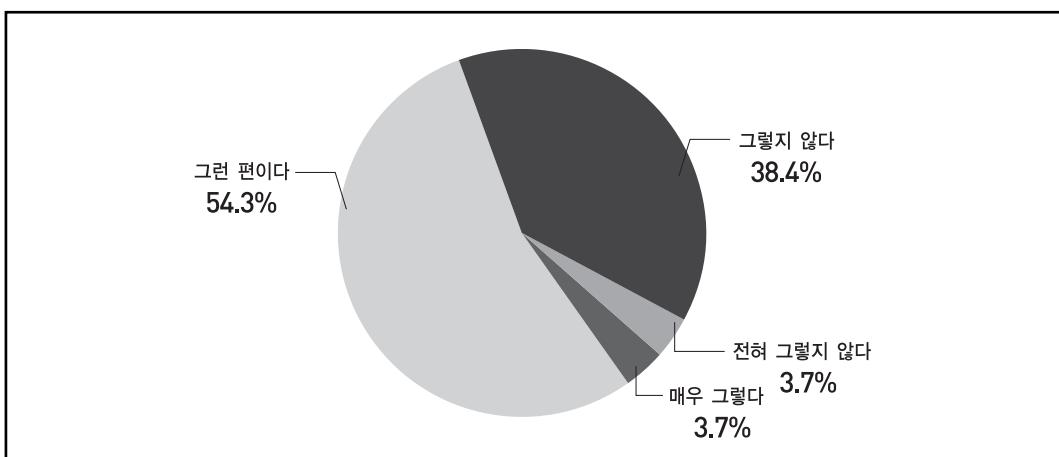
민간이전경비 운용 · 관리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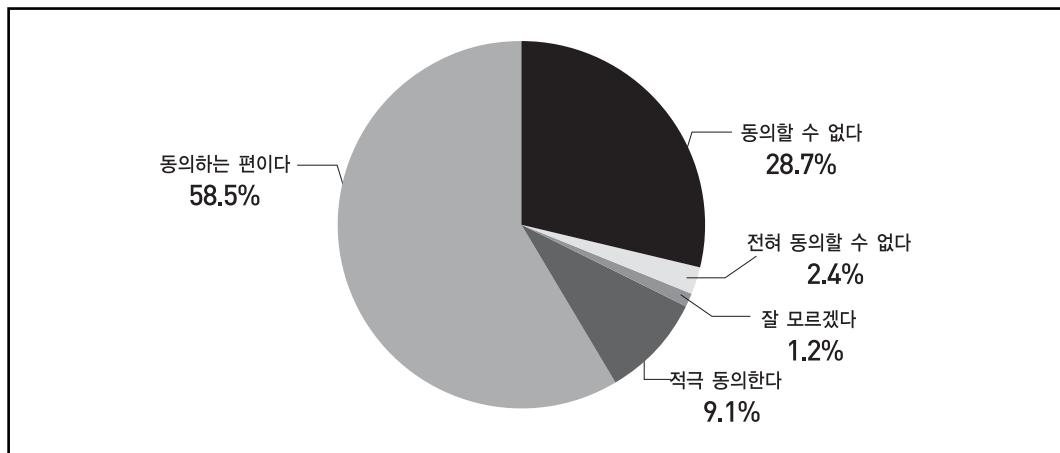
- 자치단체의 예산부서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항목은 자치단체별 한도액 선정기준과 기타 제도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민간지원경비의 유용성, 과목통합 필요성 등 실태파악과 관련한 설문항목은 5점 척도방식을 적용하였음
- 자치단체별 한도액과 관련한 적정지표는 10개 후보지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기입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제도개선은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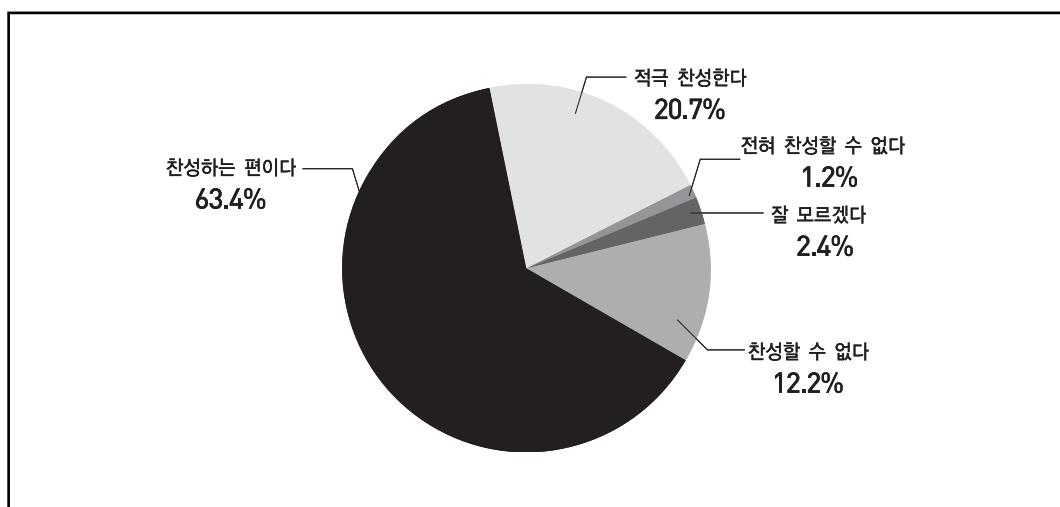
- 민간이전경비가 선심성·낭비성 예산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응답자의 58%가 동의하였음(매우 그렇다 3.7%, 그런 편이다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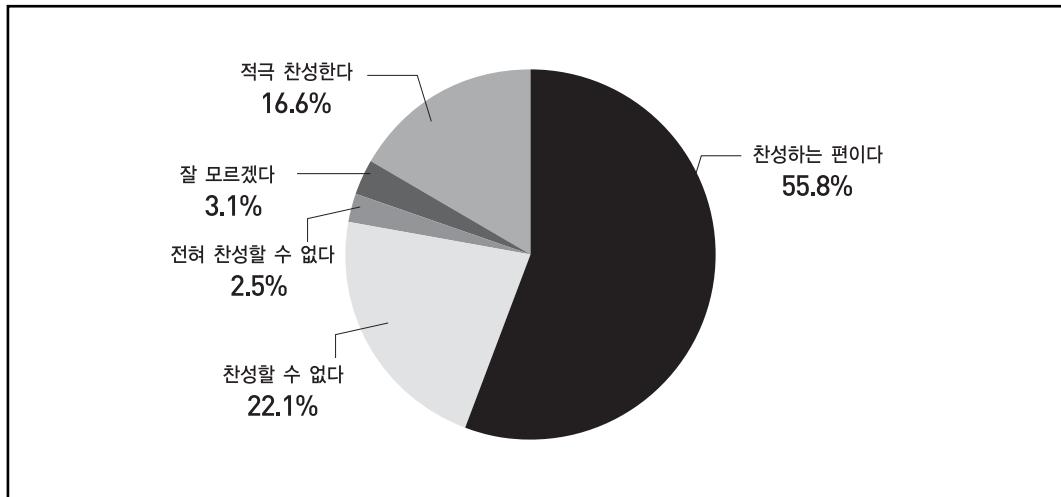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과목구분이 무의미하고 자의적으로 편성·집행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67.6%가 동의하였음(적극 동의한다 9.1%, 동의하는 편이다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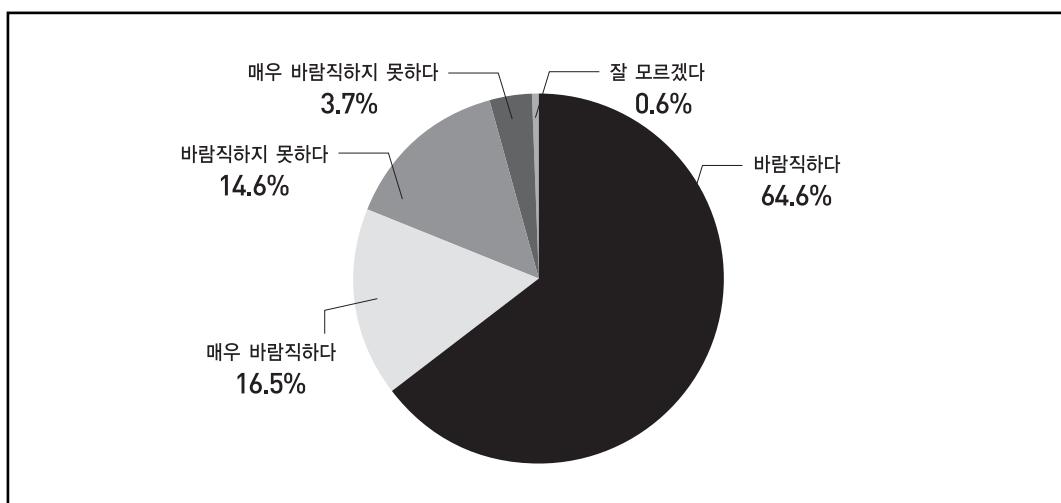
- 과목구분의 모호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경보와 민행보 과목의 통합 필요성은 84.1%가 절대적 지지를 보였음(적극 찬성한다 20.7%, 찬성하는 편이다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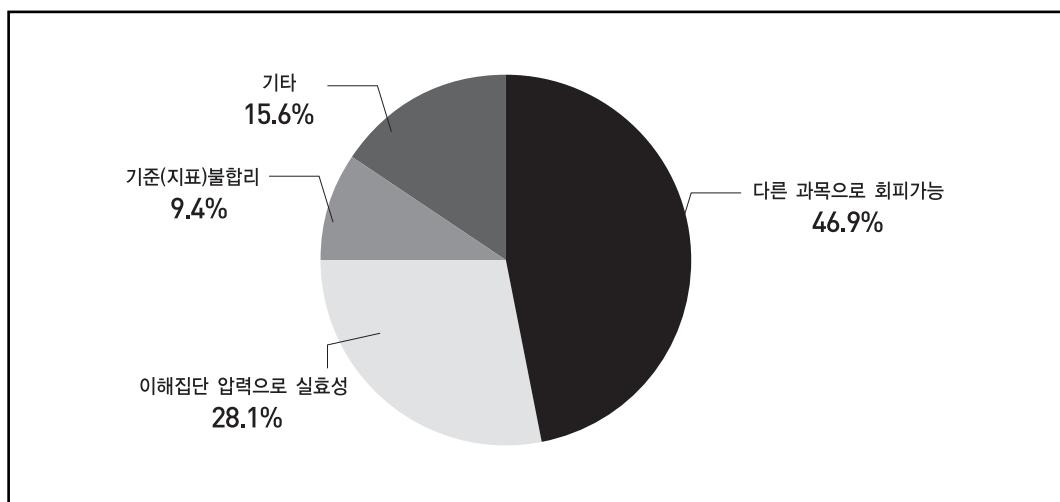
- 장기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통합할 필요성도 매우 높게 공감하였음(적극 찬성한다 16.6%, 찬성하는 편이다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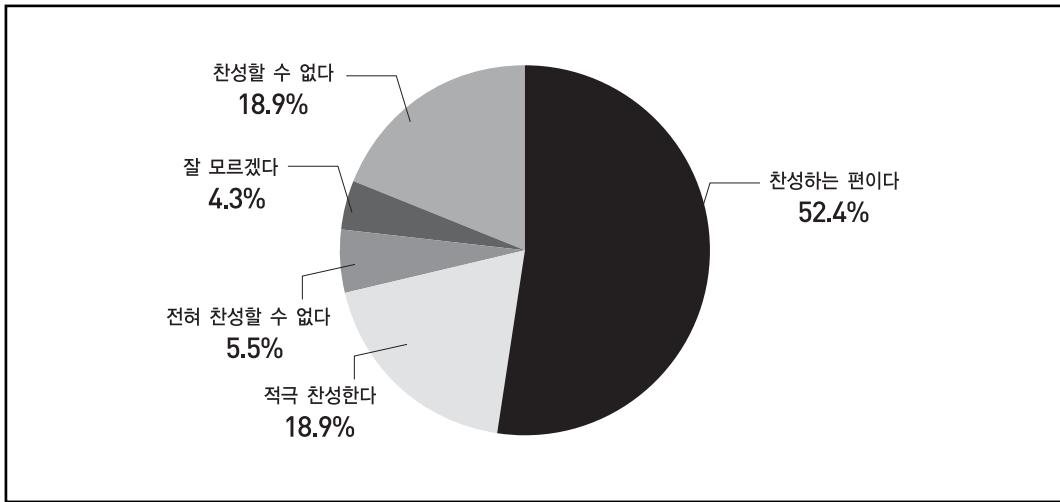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상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정책적 실효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매우 바람직하다 16.5%, 바람직하다 64.6%)



- 반면에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단체장이나 이해집단의 압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책적 실효성에 회의적이었음
 - 한도설정의 기준(지표)의 불합리 9.4%, 단체장 및 이해집단의 압력으로 실효성 저조 28.1%, 다른 과목을 이용한 전략적 회피가능 46.9%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과목을 통합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자치 단체별로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1.3%가 지지하였음
 - 적극 찬성한다 18.9%, 찬성하는 편이다 52.4%
 - 반면에 과목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은 24.4%



V

정책 대응 방안**■ 기본방향**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개선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
-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를 망라한 민간이전경비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함
 - 민간이전경비 항목간의 합리적 관계설정, 심의위원회 운용방식 및 조례등 관련 법규·제도의 연계, 성과평가 및 정책환류
- 개별 민간이전제도 각각의 운영상 개선방안을 모색함
 - 개별 민간이전경비의 도입취지 및 정책목적의 재설정,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의 합리화 등

▣ 과목구분의 합리화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운용·관리에서 초래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불합리한 과목구분에서 기인하고 있음
 - 유사 보조사업의 변칙·중복지원, 지원대상의 부적절한 선정, 예산팽창 등 상당수 핵심적인 문제들이 양 과목의 분리에서 발생
-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과목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 통합과목 기준으로 상한제 도입·운용(예산편성 기준경비에 포함)
- 장기적으로 민경보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 과목을 통합하되, 사회복지사업을 분리하여 ①사회복지 민간보조와 ②기타 민간경상보조 2개 과목으로 운용할 수 있음

〈표 6〉 민간이전경비 과목구분의 장기적 개편(안)

개 편(안)	현 행 과 목 · 사 업
사회복지 민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경보·사회단체보조·민행보의 사회복지사업 지원경비 - 민간자본보조의 사회복지 지원경비
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경보+사회단체보조+민행보(사회복지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강화

-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심의위원회제도를 도입·운용하지 않고 있음
 - 부서 차원에서 편성·지원됨에 따라 편중·편파지원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미흡
- 일회성 지원에 의한 성과부진, 사후관리 부실 억제장치도 결여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역시 NGO, 민간전문가 참여가 부진하거나 형식적인 심의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신청사업 과다,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심의 검토여건 불충분
-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보완책이 요망됨
- 단기대안 : 새로운 통합과목의 심의위원회를 예산부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함
 -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무설치 명시
 - 심의위원 확대(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의무화)
 - 수시분 폐지 및 정기심의 확대(연 2회 → 분기 1회)
 - 심의기준 객관화·구체화(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구분)
 - 회의록, 지원대상·지원액, 세부집행실적 등 재정공시대상 의무화
- 장기적 검토사항 : 민간지원경비 전면개편에 맞춰 심의위원회를 예산부서에 의무설치
 - 사회복지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경상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4)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예산편성매뉴얼에 명시

■ 집행·정산의 합리화

- 신용카드 의무화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8호)의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의무화
 - 민간이전경비 전용 결제카드제 도입도 검토 가능

● 집행·정산 설명자료 제작·배포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지침 마련
-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한 서식의 통일화
- 집행지침 및 통일된 서식 등을 토대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
-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자료 설명회 의무 개최

■ 성과평가제도 기반강화

●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체육단체 등 과거 정액단체와 과도한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의 자립능력 및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회성 지원을 억제하고 3년 내외의 보조사업 계약제 도입
- 계약기간 동안 지원규모는 사업평가와 연계·운용
- 매년 성과평가 실시 및 계약종료시 종합평가 실시하여 재계약

● 계약제·일몰제의 안착, 엄정한 집행·정산을 위해서는 사업평가제도 의무화가 요망됨

- 평가주체는 소관부서로 하되, 예산부서 확인하에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재정공시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

- 사업평가는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하며 우수 이상(80점) 보조사업자를 지원함

- 사업평가 대상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함

-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분리하여 평가지표 개발·적용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상한제 도입시 보통교부세 감액제도 적용등 정책환류기능을 제고함
 - 한도액 초과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감액제 적용
 -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한도액 초과단체 보통교부세 감액제 적용
- 정보공개 대상 · 수준 확대
 - 지방자치원리 관점에서 상한제와 같은 중앙정부 직접통제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기규율 혹은 주민에 의한 조절기능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전경비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 집행 · 성과 등 전반에 걸친 정보공개가 중요하며 단기적으로 재정공시제도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음
 - 월별 집행내역등 나열식 집계 · 공시 지양
 - 과목별 한도액 및 지원액, 과목별 주요 보조사업자 지원액, 동종단체 비교, 최근 5년간 증가율 및 세출대비 비중 등으로 확대

내용문의 : 조 기 현 수석연구원(02-3488-7325, ckh@krila.re.kr)

「자료 회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법률 제38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은 설립이래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인사에게 보급하여 왔습니다. 당 연구원은 유익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회원제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자료회원 가입방법

당 연구원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팩스(02-3488-7370)로 전송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자료회원 가입안내)에서 양식을 Down 받아 작성하시고 메일(leepyong@krila.re.kr)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기존 회원은 회비 만 납부)

2.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일반회원	개인회원	30,000원	지방행정연구,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지로납부: 지로용지발송(지로번호 7630619)
	기관회원	50,000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100,000원	지방행정연구, 연구보고서, 연구자료집,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은행송금: 국민은행 367-01-0044-581 (예금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회원	150,000원		

3. 제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 지식정보팀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3 / F. 02-3488-7370 / E. leeyong@krila.re.kr



<http://www.krila.re.kr>

「지방행정연구」원고 모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관련 전문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지방행정연구」는 1986년 7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 지방재정 · 세제, 지역정책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관련 분야의 활발한 지식교류를 위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연구지 모집분야 : 자치행정, 지방재정 · 세제, 지역정책 · 균형발전

2. 연구지 발간일정 : 연 4회 발간

— 2008년 3월호(통권 제72호), 2008년 6월호(통권 제73호)

— 2008년 9월호(통권 제74호), 2008년 12월호(통권 제75호)

3. 논문접수일정 : 연중 수시접수

4. 논문제출 방식 : E-mail로 제출 (local@krila.re.kr)

5. 논문작성 방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의

「지방행정연구지 기고안내」 참조

6. 제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 연구지원팀

(137-8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1 / F. 02-3488-7305 / E. local@krila.re.kr